

교수(6년제)승진임용심사 규정

제정 2020.07.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수(6년제) 승진임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기간)

정년을 보장받지 않는 교수의 임용기간은 6년으로 한다.

제3조 (대상)

교수(6년제) 승진임용심사 대상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 대상자
2. 부교수 중 교원인사규정 제31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제4조 (심사자료 제출)

심사자료 제출과 관련 승진 대상 교원은 다음 자료를 교무팀에 제출해야 한다.

1. 승진임용심사 신청서(서식 1)
2. 승진심사 자료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5조 (심의) 정년보장 심사위원회는 평가표(서식4)에 의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교발전을 위한 공적 (서식 2)
- ② 학교발전을 위한 계획 (서식 3)
- ③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내역	비율	비고
교원업적평가 실적	임용일자기준 최근 3년간 평균	70%	
학교발전을 위한 공적	교원의 기술 내용에 대한 평가	15%	
학교발전을 위한 계획	교수 자질 및 발전가능성 평가	15%	
합계		100%	

- ④ 총장은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임용대상자에 대해서 제3항의 인정점수(100점 만점)에 추가하여 대학발전 부문의 실적으로 10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대상자 추천)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는 제5조의 심의기준에 의해 산출된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 (임용제청) 총장은 제6조에 의해 추천받은 대상자 중 대학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제청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혜전학원의 정관과 본교 교원인사 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한다.